|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
| --- |
| 인 구 청 년 과 |

#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 의 안<br>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 1. 제안이유

가. 청년의 문화·여가 및 교류·소통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나. 설계·인허가·공사 등 시설 조성 전반에 전문적인 사업관리와 기술적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관련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함

다.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합동「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2024. 9.)에 따른 공모사업 선정(2025. 3.)
-「지방자치법」제117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2) 필요성 : 시설 기획·건축 분야 전반에 전문성을 갖추고, 토목·건축 기술 인프라와 공사 감독·관리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년문화센터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 수행 전반

(1) 청년문화센터 조성 관련 용역 발주 및 관리

(2) 청년문화센터 조성 공사 시행 등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추진 예정

라. 위탁시설 : 해당없음(시설 조성사무 위탁)

마. 위탁기간 : 2027. 4. ~ 2030. 3.(예정)

※ 재생계획(변경) 승인 후 위탁 추진 /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 위탁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총 8,218.5백만원(국 5,688.5 도 759 시 1,771)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사업비 | 연차별 투자계획 | | |
|---|---|---|---|---|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계 | 8,218.5 | 2,343.5 | 2,547 | 3,328 |
| 국 비 | 5,688.5 | 1,623.5 | 1,737 | 2,328 |
| 도 비 | 759 | 216 | 243 | 300 |
| 시 비 | 1,771 | 504 | 567 | 700 |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공위탁 추진계획(안) 결재('26.9.18.)

아. 위탁구분 : 신규위탁

자. 위탁유형 : 시설형

## 3. 부서의견

○ 단계별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시설 조성사업으로 전문적인 사업 추진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제300회 임시회 동의 후 심의 예정

라.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해당없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6. 생략

#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예산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국비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수료(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영함

나. 청년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소요비용을 위탁기간인 3년간 추산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2026) | 2차년도 (2027) | 3차년도 (2028) | 4차년도 (2029) | 5차년도 (2030) | 합계 |
|---|---|---|---|---|---|---|---|
| 세출 | ○ 위탁사업비 (조성 및 위탁수수료) | 2,343.5 | 2,547 | 3,328 | - | - | 8,218.5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1차년도 (2026) | 2차년도 (2027) | 3차년도 (2028) | 4차년도 (2029) | 5차년도 (2030) | 합계 |
|---|---|---|---|---|---|---|
| 국 비 | 1,623.5 | 1,737 | 2,328 | - | - | 5,688.5 |
| 도 비 | 216 | 243 | 300 | - | - | 759 |
| 시 비 | 504 | 567 | 700 | - | - | 1,771 |
| 민 간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합 계 | 2,343.5 | 2,547 | 3,328 | - | - | 8,218.5 |

5. 부대의견 : 현재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재생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승인 후 기본·실시 설계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6. 작성자 : 인구청년과 저출생대응팀 김나연(☎ 480-2526)

##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구분 | 예산액<br>(백만원) | 산출내역 | |
|---|---|---|---|
| **합계** | **8,218.5** | | |
| 공사비 | 6,547 | • 공사비(부가세 포함)<br>- 건축, 전기, 기계공사 등 | 6,547백만원 |
| 설계비 | 453 | • 기본 및 실시설계비<br>• 인증관련 추가설계비<br>• 손해배상보험료<br>• 부가세 | 372백만원<br>45백만원<br>2백만원<br>34백만원 |
| 감리비 | 327 | • 감리비 | 327백만원 |
| 부대비 | 127.5 | • 설계공모비<br>• 설계의도 구현비용<br>• 인증수수료<br>• 각종 조사·평가 비용 | 45백만원<br>39백만원<br>11백만원<br>32.5백만원 |
| 예비비 | 373 | • 예비비<br>- 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의 5% | 373백만원 |
| 위탁<br>수수료 | 391 |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위탁수수료 | 391백만원 |

| 소 관 부 서 | | 인구청년과 |
|---|---|---|
| 입<br>안<br>자 | 과 장 | 박 혜 선 |
| | 팀 장 | 공 석 |
| | 담 당 자 | 김 나 연<br>(480-2526) |